법 률 자 문 결 과 보 고 서

연번	구분	법무도우미 공개대상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비 고
1	학교운영비 관련	공개	□ '2012. 학교운영지원비의 감면 미청구시 소급 소멸시효: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15p)에 따라 자녀가 2인 이상 동일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그 중 1인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으며, 2012학년도 재학 당시 감면 미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의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적용 : 「민법」 제164조, 미수납액 소멸시효로 학생의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해당됨. 「지방재정법」제82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함. 아울러, 2012학년도 감면 미신청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2	계약관련	공개	□ 본교가 공고한 두 건의 견적제출 모두 낙찰된 낙찰자가 보유차량 부족으로 한 건에 대하여 포기서를 제출하고자 한 바, 두 건 중 한 건에 대해서는 포기서 징구 후 수의계약결격업체 등록을 하고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 해당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비록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일지라도 정당한 이유없이(낙찰자의 실수로 자격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건에 모두 투찰하였기에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 포기서를 제출해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부합하는 해당업체와 두 건의 계약을 모두 체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두 건의 각 입찰은 별개의 독립된 계약에 관한 것이고, 귀교가 위 각 입찰공고를 하면서 같은 업체가 두 개의 입찰에 동시에 투찰하지 못하도록 제한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낙찰 받은 2개 모두를 포기하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귀교가 취할 수 있는 경우 중 한 건에 대하여만 계약을 체결하고 또 다른 한건에 대하여는 포기서를 징구하여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함을 지지함. 참고로, 낙찰업체가 견적서를 기제출하였으므로 계약을 체결하는 한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상의 수의계약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음.	

연번	구분	법무도우미 공개대상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비 고
3	계약관련	공개	□ 방과후학교 위탁 계약 해지로 인하여 계약보증금 세입조치를 안내하였으나, 계약보증금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바, 계약보증금 납부시까지 수강료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와 수강료의 포함된 인건비를 학교에서 직접 처리 가능한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3항에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의 상계를 금지하도록 규정이 있으므로 계약보증금과 수강료 지급건을 상계할 수 없고 계약보증금 납입시까지 수강료를 보류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탁업체 청구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 수강료 지급을 보류 할 수 없으므로 그안에 포함된 인건비 처리를 논할 실익이 없으며, 인건비를 학교에서 직접 지급할 경우 위탁업체의 서명상의 동의를 받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4	기간제 교사 성과금	공개	□ 기간제 교사 성과 상여금이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사가 해당됨. 단 2개월 이상 동일한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제 교사가 본인의 사유(퇴직, 발령, 사망등)로 평가 대상 기간중에 계약해지시 성과금 제외됨. 계약을 2013.3.1.-2014.2.28.일까지 계약하였으나, 본인이 8월9일 학교로 전화를 하여 학교를 그만두겠다며 교감을 찾았고 8월12일에 교감과 만나 8월18일자로 그만두겠다고 인수인계를 함. 자필 사직서를 받지 않은채 의원면직 관련내부 공문을 시행). 이에 기간제교사 본의 사유로 퇴직하였으므로, 성과금 미지급 하였으나, 이에 퇴직은 본인의 사유가 아니라며 소송을 하겠다고 함. 사직원 미징구도 의원면직의 효력이 있는지?	☞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근로 계약의 종료에 의한 의사합치가 있었고, 더 이상 근무 하지 않은 사실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므로 본인의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직에 의한 계약해지는 본인에 의한 것	

연번	구분	법무도우미 공개대상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비 고
		공개	〃	☞ 8.9일 전화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8.12일 학교를 찾아와 교감을 만나 퇴직의사를 밝히며 인수인계를 한 사실로도 기간제 교사 본인이 자기 판단으로 퇴직의사를 밝힌 것으로 사료됨	
		공개	〃	☞ 구두로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종료됨. 즉 사직의 의사 표시에 대하여 상대방이 승낙을 하면 사직의 효과는 발생한다. 본건의 경우 교사의 임면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는 만큼 내부기한을 통하여 학교장이 결재를 하였다면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본건 기간제 근로 약정은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공개	〃	☞ 8.9일 전화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8.12일 학교를 찾아와 교감을 만나 퇴직의사를 밝히며 인수인계를 한 이상 자필이력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의사유인 의원면직 효력이 있다고 판단됨	
		공개	〃	☞ 기간제교원의 의사를 표시하는데 있어 사직서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바, 기간제 교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해여 학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의사표시가 합치된 시점에 의원명직은 성립하였다고 판단됨.	

연번	구분	법무도우미 공개대상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비 고
5	채권압류	공개	□ 공사대금 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금액이 압류된 공사대금으로 충분히 지급 가능할 경우, 공탁 처리 대신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에도 경합이 없으면 지급 가능함.	
6	계약관련	공개	□ 세월호 관련하여 본교에서는 2014. 4.28.~4.30.에 수학여행 숙박업체와 구두로 계약한 건에 대하여 계약 해지하고자 4.18.에 업체에 연락하였으나 업체에서는 위약금 15%를 납부하라고 함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5일 이전에 취소한 여행에 대해서는 전액 돌려줘야 한다고 하는데 숙박업체 계약과는 상관없는 기준인지? - 위약금을 내야한다면 납부하는 주체가 학교인지? 학부모인지? - 위약금을 내야한다면 위약금액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되고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하였다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 고 판단됨 ☞ 위약금 주체는 학교임 ☞ 15%의 위약금을 보낼 필요는 없고 해약으로 인하여 숙박업체의 손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손해발생여부와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됨.	
		공개	〃	☞ 수학여행 숙박업체 계약과 해지에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당사자 합의가 안될 경우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 ☞ 학부모 부담이 맞다고 판단 ☞ 위약금을 부담할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업체와 협상을 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최대한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	

연번	구분	법무도우미 공개대상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비 고
		공개	〃	☞ 구두계약시 위약금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면 15%를 부담할 성격이 아니나 계약 해지에 따른 일반 법리에 따라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음 ☞ 위약금 납부 주체는 학교임	
		공개	〃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국내숙박여행의 경우 여행자측의 귀책사유로 여행개시 5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여행사가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약금을 지급 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